

# 주주총회소집공고

2009년 3월 5일

회 사 명 :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 성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8

(전 화) 02 - 3218 - 6701

(홈페이지)<http://www.isdongse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양 수 창

(전 화) 02 - 3218 - 6701

#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 제 34 기 )

당사는 상법 제365조 및 정관 제19조에 의거 제34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09년 3월 20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8번지 은성빌딩 별관
3. 회의목적사항
  - ①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 ②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34기(2008년 1월 1일 ~ 12월 31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이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배당(예정)내역 : 1주당 50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 제외)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3월 5일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53-8번지  
**아이에스동서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이 성 철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박인원 (출석률: 67%)	정순경 (출석률: 0%)	김정보 (출석률: 100%)	정상명 (출석률: 0%)	박득표 (출석률: 0%)
			찬 반 여부				
1	2008.01.16	① 제3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불참	불참	-	-	-
2	2008.02.11	① 제33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② 재무제표 승인의 건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의 건	찬성	불참	-	-	-
3	2008.02.14	① 동서산업건설(주) 매각의 건	찬성	불참	-	-	-
4	2008.02.29	① 대표이사 선임의 건	-	-	찬성	-	-
5	2008.03.10	① 자본 감소의 건 ② 정관 변경의 건 ③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	찬성	-	-
6	2008.03.31	①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 ② 임시주주총회 개최의 건	-	-	찬성	-	-
7	2008.05.23	① 임시주주총회 시간·장소 변경 및 의안 확정 의 건	-	-	찬성	-	-
8	2008.06.18	① 합병기일 변경 승인의 건	-	-	-	불참	불참
9	2008.07.21	① 합병경과 보고의 건 ② 지점 설치의 건 ③ 금융기관 자금차입의 건 ④ 자기주식 일부 매각의 건	-	-	-	불참	불참
10	2008.12.22	① 자기주식 일부 처분의 건 ② 사업용지 매각의 건	-	-	-	불참	불참

※ 2008년 2월 29일 박인원 사외이사 임기만료 및 정순경 사외이사 중도퇴임.

※ 2008년 2월 29일 김정보 사외이사 신규선임 및 2008년 6월 13일 중도퇴임.

※ 2008년 6월 13일 정상명, 박득표 사외이사 신규선임.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해당 사항 없음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400	68	34	

※ 주총승인금액은 이사 전원의 보수한도임.

※ 상기 인원수는 2008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이며 지급액은 중도퇴임한 사외이사  
의 보수를 포함한 금액임.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 사항 없음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 해당 사항 없음 ]

## III.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1. 사업의 개요' 에 기재된 전망 등은 사설 경제연구소 및 국가기관 발표 자료  
등을 참고한 예측자료이므로 실제 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가. 업계의 현황

##### (1) 특성

요업부문	타일, 위생도기 등은 건축 마감재로서 국내 건설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제품 생산 에 투입되는 원·부자재 중 일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환율 및 국제 유가 등 국제 원자재 시장 동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콘크리트부문	PHC PILE 등의 콘크리트 제품은 토목 및 건축 기초자재로서 부피가 크고 중량품이기 때문 에 판매관리비 중 운반비의 비중이 높으며, 제품 야적 공간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설부문	건설업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산업으로 국민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의 건설에서부터 도로, 항만 등 산업기반 시설의 건설 및 국토개발 등 광범위한 고정자본의 형성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	---

## (2) 성장성

요업부문	건설경기 위축으로 국내 요업시장의 성장성 둔화가 우려되나 환율불안으로 인한 수입제품 판매감소는 국내 제조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관심과 소득수준 향상으로 제품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부문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균형개발사업의 본격 시행과 2기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 사업, 공공 SOC 투자 등 정책적 건설 수요 확대로 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어 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부문	건설산업은 과거의 고성장과는 달리 저성장의 성숙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시장경쟁을 통한 건설업체의 차별화가 심화될 것이며 건설 시공위주의 단순 서비스 산업에서 개발기획, 자금조달, 시공관리, 시설운영 등을 포괄하는 복합산업구조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국민소득향상은 삶의 질적수준의 향상에 대한 욕구로 이어져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요업부문	건설경기 중 특히 민간건설부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아울러 국제 원자재 시장의 영향도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부문	건설경기 중 산업기반, 국토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건설수요 확대 및 부동산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부문	건설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인 수주산업으로 인하여 정부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의 설비투자 등은 물론 가계의 주택 구매상황 등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또한 정부의 부동산 가격 및 관련법규나 정부규제, 정부의 투자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 (4) 경쟁요소

요업부문	일반적으로 고가제품 시장은 이태리 및 유럽 제품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고, 저가제품 시장은 중국 및 동남아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고가시장은 다양한 기능성제품의 개발과 함께 트렌드에 부합하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으며 저가시장은 중국을 통한 OEM 방식으로 상품을 수입 판매하여 치열한 경쟁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부문	내수시장은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당사는 고부가가치 제품인 PHC PILE 중 특수규격의 적극적인 수주와 함께 원가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문	건설업은 완전경쟁 시장으로서 타 산업에 비해 진입이 쉬운 편이고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에

	대한 국내 부동산 소유 허용, 외자유치 촉진 등 개방정책의 결과 SOC, 주택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에서 외국건설업체의 진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

### (5) 자원조달상의 특성

요업부문	주요 원재료인 유약 및 안료와 소성시 사용되는 GAS 등은 환율과 국제유가의 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부문	제조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부자재인 시멘트, 골재, 철재, 유류 등의 단가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부문	건설 자재의 경우 철강, 시멘트 등 기초 자재에 대한 국내 수급 자원 비율이 높은 편이나 목재, 골재, 모래 등은 국내 자원 소진에 따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의존도가 점차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계절적 특성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가 크고 주거형태가 다변화되지 못하여 특정자재에 대한 수요 편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6) 관련법령 또는 정부의 규제 등

공 통	건설업은 유한한 토지자원을 활용하여 주택과 사회기반시설 등 국민생활의 기본이 되는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타산업에 비해 관련 규제법령이 많은 편입니다. 부동산 관련 규제는 참여정부에서 과도한 규제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에 새 정부 출범이후 정책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분야였으나 정부의 경기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택수요 활성화는 아직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 (가) 영업개황

지난 2008년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 우리나라도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습니다. 2007년 4/4분기 미국 주택시장의 침체로 시작된 금융위기로 선진국의 실물경제 위축이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신흥시장의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어 개도국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4/4분기 미국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 등 글로벌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신용경색이 심화되어 세계경제가 급격히 위축되었으며 이 시기의 경기하강 속도는 국제 전망기관들의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국내경제 또한 세계경제의 여파로 경기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또한 세계경제 침체로 급감하며 국내경제의 경기둔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고환율과 외화유동성 경색, 자산가치 하락 등은 국내경제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국내경제는 2008년 4/4분기 들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

며 2009년 역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국내경제의 침체속에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고자 당사는 제조업 기반 사업구조에 프로젝트 기반 사업구조를 추가하여 수익 창출의 양적/질적 향상 및 재무구조 개선을 도모하고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하여 지난 7월 22일에 일신건설산업(주)와 합병을 하였습니다.

제조부문의 2008년 매출액은 1,898억원, 영업이익은 95억원을 달성하였으나 합병으로 인하여 매출액 1,100억원, 영업이익 88억원이 합병 대차대조표에 승계되었고 합병 이후의 영업 실적만 피합법법인인 구.일신건설산업(주)의 손익과 함께 제34기 재무제표에 반영되었습니다.

건설부문은 전년 동기대비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하였으나 이는 장기화되는 건설경기의 침체에 대비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재무 안정성에 중점을 두기 위해 사업을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동조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실물경기의 하강추세는 2009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당사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아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각 사업부문의 역량을 강화하여 수익성 위주의 경영성과 극대화과 관리능력 강화로 기업가치 향상에 주력할 것입니다.

(나) 사업부문의 구분

사 업 부 문		주 요 품 목
요업사업부문	타 일	벽타일, 바닥타일, 기능성타일 등
	위생도기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비데일체형양변기, 비데, 수전금구 등
콘크리트사업부문		PHC PILE, SEGMENT, PC부재, 침목 등
건설사업부문	건 축	상업용, 업무용, 주거용, 공장건물 신축공사 등
	토 목	도로, 교량, 항만, 매립, 부지조성준설, 고속철도공사 등
기 타		임대 등

(2) 시장점유율

- 시장점유율은 합리적인 추정이 곤란하여 기재를 생략함.

(3) 시장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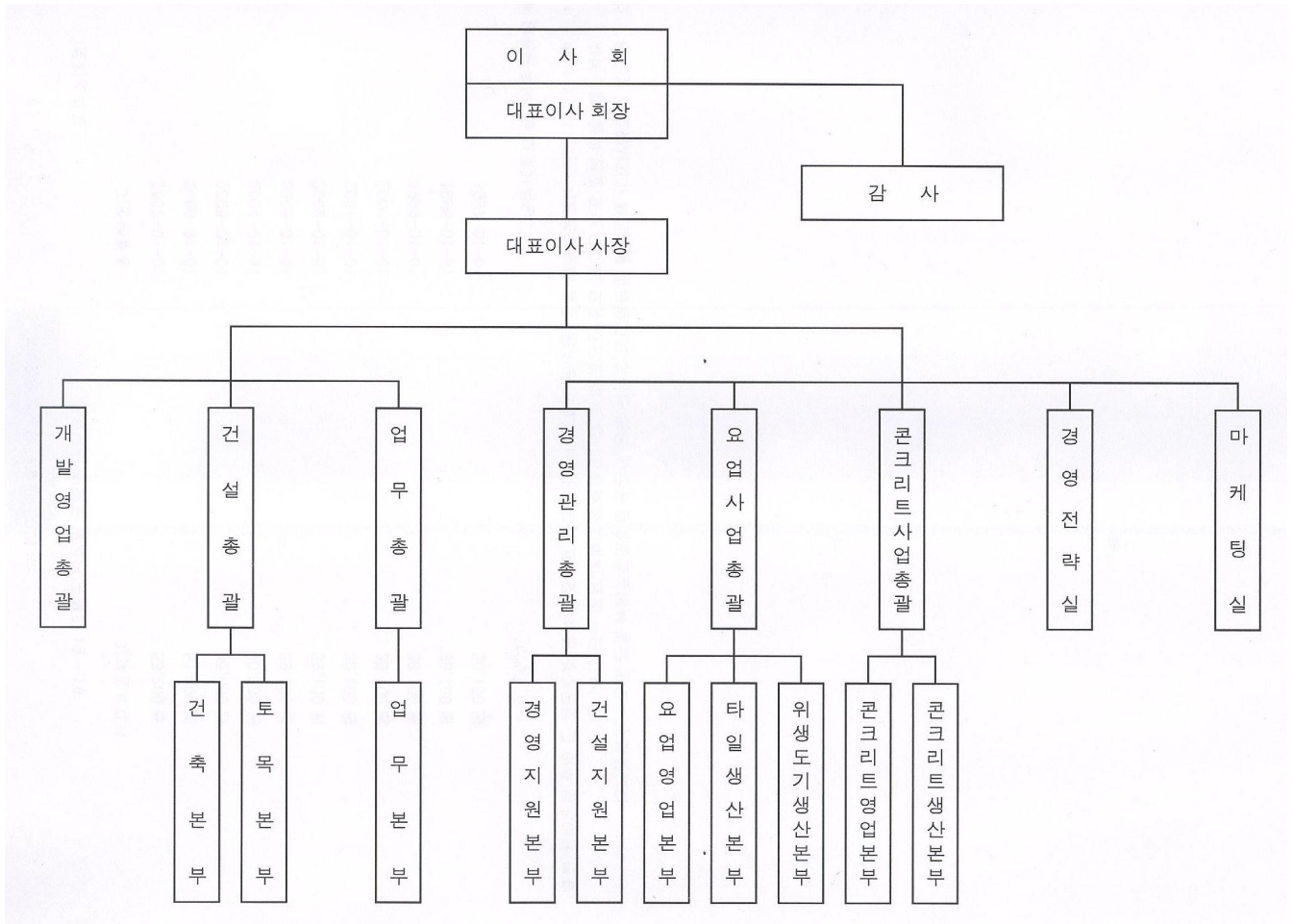
당사 영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설경기는 2008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장기적인 부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균형개발사업들의 본격적 추진에 따른 공공 토목수주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불투명한 전망과 수급불균형에 따른 미분양 누적 등으로 주거용 건축투자가 크게 부진하였으며 이러한 민간 건설부문의 위축현상은 2009년에도 이

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 공공부문의 토목건설 투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지출이 실제 건설투자로 이어지는 시차를 고려할 때 도로 및 철도부와 4대강 정비부문 등의 공공투자 증대는 200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며 또한 최초 분양이 2009년에 집중되어 있는 2기 신도시 공급물량 확대 등의 요인이 민간부문의 부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 사항 없음 ]

(5)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상기 Ⅲ. 경영참고사항 중 (가) 영업개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제33기 : 구.일신건설산업(주)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대 차 대 조 표>

제 34 기 2008. 12. 31 현재

제 33 기 2007.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자 산		
I. 유동자산	210,857	197,811
(1) 당좌자산	125,486	82,617
(2) 재고자산	85,371	115,194
II. 비유동자산	253,990	57,861
(1) 투자자산	32,967	11,577
(2) 유형자산	213,583	31,873
(3) 무형자산	(2,827)	305
(4) 기타비유동자산	10,267	14,106
자산총계	464,847	255,672
부 채		
I. 유동부채	149,496	64,112
II. 비유동부채	44,556	18,416
부채총계	194,052	82,528
자 본		
I. 자본금	8,511	5,000
II. 자본잉여금	216,347	-
III. 자본조정	(113,297)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	-
V. 이익잉여금	159,231	168,144
자본총계	270,795	173,144
부채와자본총계	464,847	255,672

-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

제 34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33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I. 매출액	160,221	170,009
II. 매출원가	137,724	122,621
III. 매출총이익	22,497	47,388
IV. 판매비와관리비	28,982	12,038
V. 영업이익	(6,485)	35,350
VI. 영업외수익	15,393	12,095
VII. 영업외비용	24,298	5,899
VII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5,390)	41,546
IX. 법인세비용	(6,477)	12,144
X. 당기순이익	(8,913)	29,402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34 기 (2008. 01. 01 부터 2008. 12. 31 까지)

제 33 기 (2007. 01. 01 부터 2007. 12. 31 까지)

(단위 : 백만원)

과 목	제 34 기	제 33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6,832)	32,081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2,081	2,418
2. 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	-	261

3. 당기순이익	(8,913)	29,402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53,104	-
1. 임의적립금	53,104	-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46,272	30,000
1. 이익준비금	18	-
2. 임의적립금	-	30,000
3. 자기주식처분손실	46,072	-
4. 배당금 가.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보통주: 당기 50원 (10%) 전기 -원 (-%))	182	-
Ⅳ.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2,08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 34 기			제 33 기		
	보통주	우선주	계	보통주	우선주	계
주식수(천주)	17,022	-	17,022	500	-	500
주당배당금(원)	50	-	50	-	-	-
주당배당률(%)	10	-	10	-	-	-
배당금총액(백만원)	182	-	182	-	-	-

※ 제34기 배당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자사주 제외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 사항 없음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① . . . . .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① . . . . . (삭 제)	법률개정

<p>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p> <p>② (기재생략)        1. 증권거래법 제2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 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 제18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 . . . .        3. 증권거래법 제191조의7의 규정에 . . . . . 우선 배정하고자하는 . . . . .        4.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 . . . . 우선발행하는 . . . . .        5. 증권거래법 규정에 의하여 . . . . .        6. 외국 금융기관, 기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자본참여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경영상 필요로 국내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p>	<p>-        -        - ② (현행유지)        1. 주주우선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2.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 . . . .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 . . . . 우선배정하는 . . . . .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 . . . .        . 발행하는 . . . . .        5. (삭 제) . . . . .        6.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삭 제)</p> <p>- ③ 제②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항 신설)</p> <p>-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 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본항 신설)</p>	<p>에        따른 변경</p>
<p>제9조의2 (일반공모증자)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에 의한 신주를</p>	<p>① (삭 제)        ② (삭 제)</p>	<p>제9조에        흡수통합</p>

<p>발행할 수 있다.</p> <p>② 일반공모증자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이 경우 신주의 발행가격은 증권거래법의 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p>		
<p>제9조의3 (주식매수선택권)</p> <p>① . . . . . 임원 또는 직원에게 . . . .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 . . . .</li> <li>· 주식매수선택권을 . . . . .</li> </ul> <p>② . . . . .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최대주주(증권거래법 제54조의5 제④항 제2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 3 제②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해당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li> <li>2. 주요주주(증권거래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해당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 임원인 자를 포함한다.)를 제외한다.</li> <li>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li> </ol>	<p>① . . . . .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 . . . . 주식매수선택권을 . . . . .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 . . . .</p> <p>② . . . . .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삭 제)</li> <li>2. (삭 제)</li> <li>3. (삭 제)</li> </ol> <p>③ . . . . . 제7조의 주식 중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 . . . .</p> <p>⑤ (현행유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 . . . 한 주식의 실질가액</li> </ul> </li> </ol>	<p>법률개정 에 따른 변경</p> <p>상법에 구체적으로 규정</p> <p>법률개정 에 따른 변경</p>

<p>③ . . . . . 기명식 보통주식 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하되 제①항의 주주총회 결의시 . . . . .</p> <p>⑤ (기재생략)</p> <p>1. (기재생략)</p> <p>가. . . .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p> <p>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p>	<p>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p>	
<p>제16조 (전환사채의 발행)</p> <p>① (기재생략)</p> <p>4.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 . . . .</p>	<p>① (현행유지)</p> <p>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 . . . .</p>	<p>법률개정에 따른 변경</p>
<p>제17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① (기재생략)</p> <p>4. 증권거래법 제192조의 . . . . .</p>	<p>① (현행유지)</p> <p>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 . . . .</p>	<p>법률개정에 따른 변경</p>
<p>제21조 (소집통지 및 공고)</p> <p>① . . . . .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 . . . .</p> <p>② . . . . .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 . . . .</p> <p>③ 이 회사가 제①항 및 제②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0 제2항에서 규정하는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참고사항을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증권관리위원회,</p>	<p>① . . . . .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 . . . .</p> <p>② . . . . .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①항의 소집통지에 . . . . .</p> <p>③ (삭 제)</p>	<p>법률개정에 따른 변경</p> <p>상법에 구체적으로 규정</p>

<p>증권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소 집통지 또는 공고에 갈음할 수 있다.</p>		
<p>제41조의4 (사외이사의 자격) ① . . . . . 증권거래법등 . . . . .</p>	<p>① . . . . . 상법등 . . . . .</p>	<p>법률개정 에 따른 변경</p>
<p>제45조의2 (주식의 소각) ③ (기재생략) 1.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1항 각 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 . . . 증권거래법 제 189조의2 제1항 제1호의 방법에 . . . . .  2. . . . . 증권거래법 시행령이 . . . . . .</p>	<p>③ (현행유지)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2호의 방법에 따 를 것.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165조의2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 . . . . 2. . .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 . . . . .</p>	<p>법률개정 에 따른 변경</p>
	<p>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 한다.</p>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권민석	1978.02.27	아니오	특수관계인	이사회
양수창	1955.05.05	아니오	임원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권민석	現 개발영업총괄부사장	舊 일신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없음
양수창	現 경영관리총괄본부장	舊 동서산업(주) 재경본부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명 (2명)	6명 (2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400백만원	1,5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명	1명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50백만원	15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